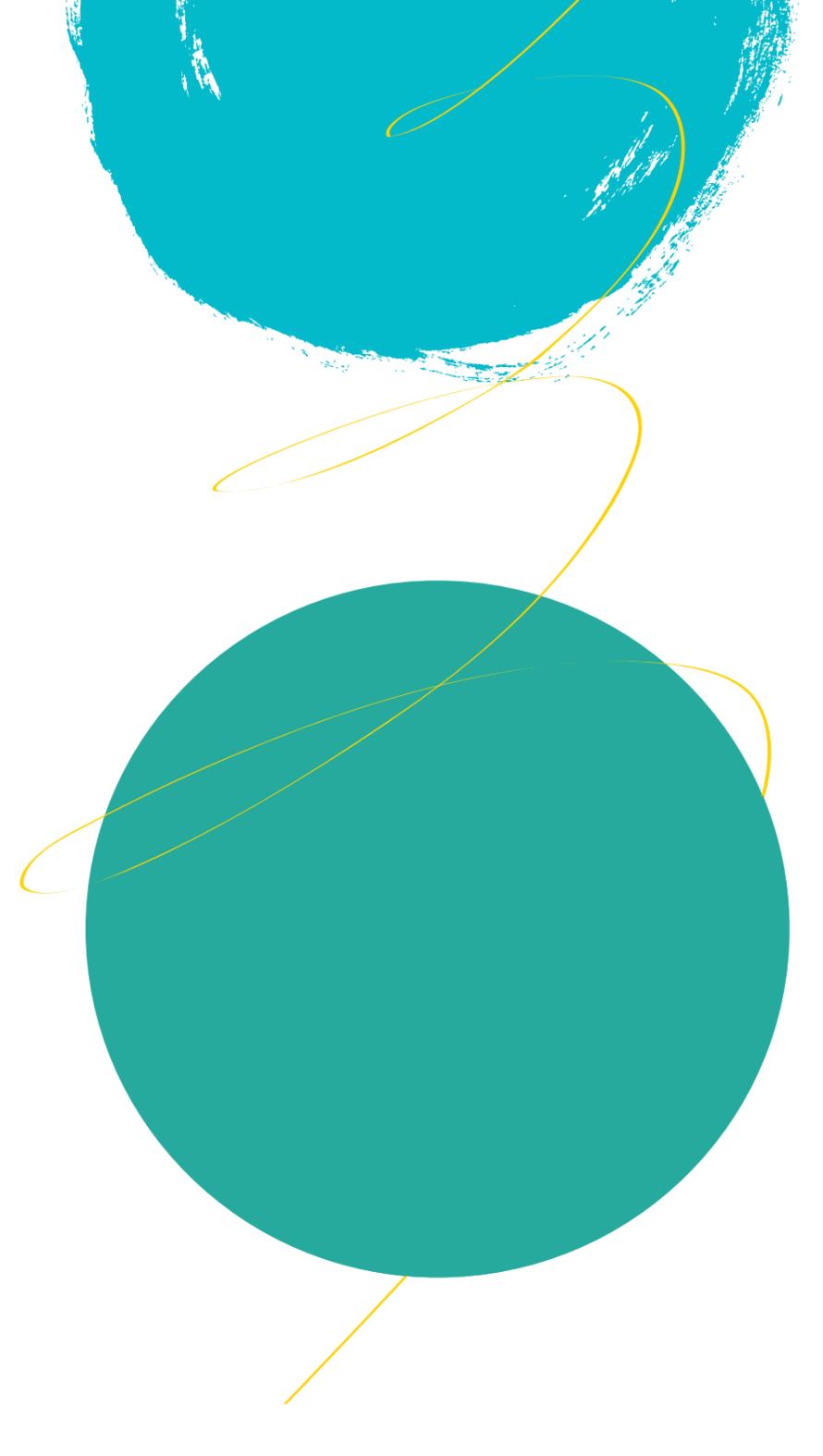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사로 가는 길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공인
문화
예술
교육사



국가공인자격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개선 안내

차별화된
역량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창조적 문화활동의
동반자

- 1 문화예술교육사란? / 04**
 - 문화예술교육사 도입배경 / 06
 - 문화예술교육사의 정의 / 08

- 2 개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 10**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 / 12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 세부사항 / 14
 -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 개정
 - 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편
 - 3)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 적합여부 확인요청 의무화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FAQ / 22

- 3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의 실현 / 28**
 - 문화예술교육사 전망 / 30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현황 / 32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경로 / 34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현황 / 36
 -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 / 38

국가가 공인하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문화예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전문인력 배출 및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수준 제고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2004년과 2005년 정책형성과
체계화를 거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인력과 기관 및 단체들의
규모 또한 확대되어 왔습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공인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신뢰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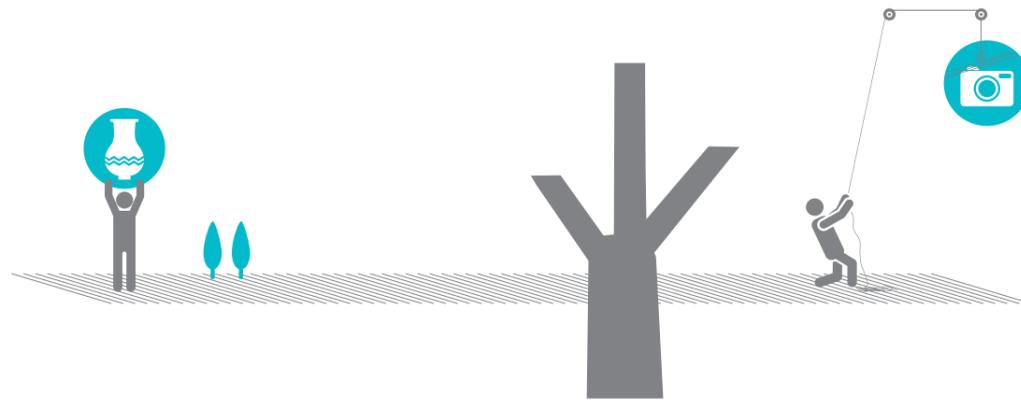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사 도입배경

문화예술교육사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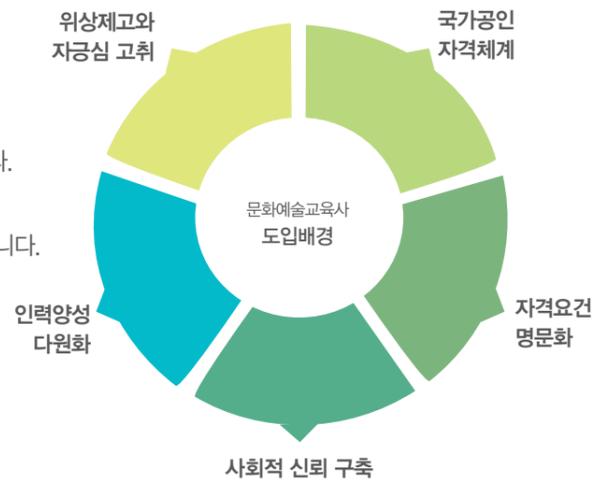
예술과 교육의 징검다리 문화예술교육사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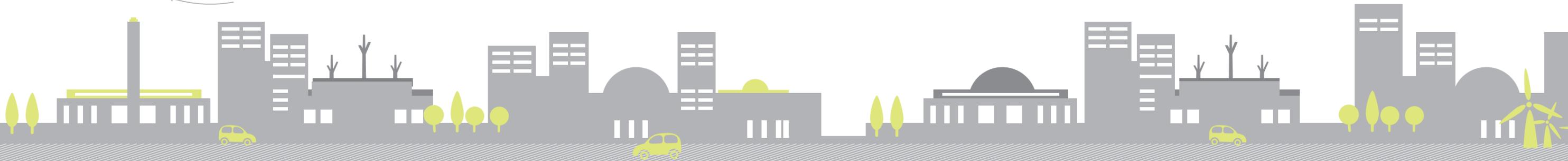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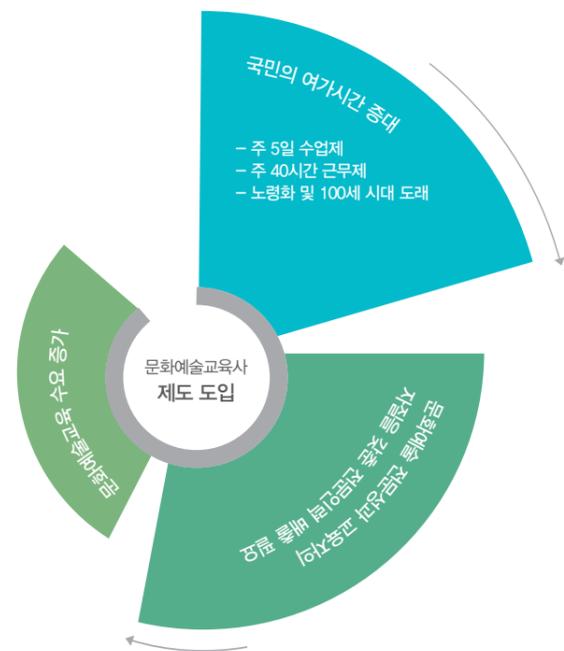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사 도입배경

국가 자격제도 도입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 근거와 위상을 제고하여
관련 인력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제화, 다양화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기관을 다원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6년 제도개선을 통해 더욱 앞선 제도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격 희망자에게는 기회를 더 폭넓게 제공할 것이며
교육과정의 합리적 개편은 현장성을 겸비한 전문 인력 배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가자격의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며
문화예술교육을 꿈꾸는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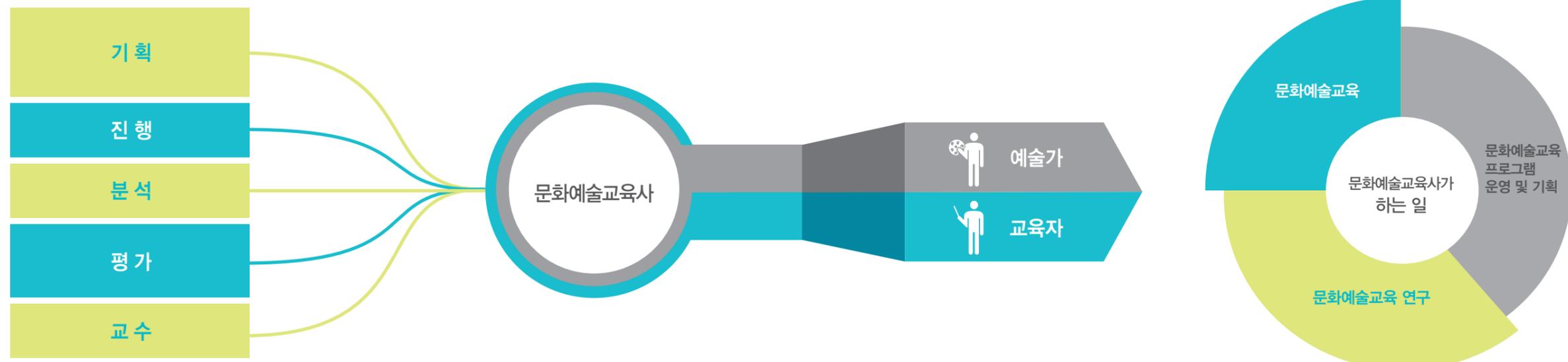
02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이 교수활동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게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필요로 합니다.

차별화된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문화예술교육사 정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문화예술교육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섭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

2014년 12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시

학력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합리적으로 개편 되었습니다.

취득 희망자에게 더 넓은 기회를 주고

문화예술 자격에 꼭 필요한 탄탄한 교육과정으로

개인과 사회의 삶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양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분야 최초의

국가 공인 자격제도, 문화예술교육사가

당신의 꿈에 한 걸음 먼저 다가하겠습니다.

창조적 문화 활동의 동반자로서의

문화예술교육사의 꿈,

이제 여러분이 이를 차례입니다.

2

개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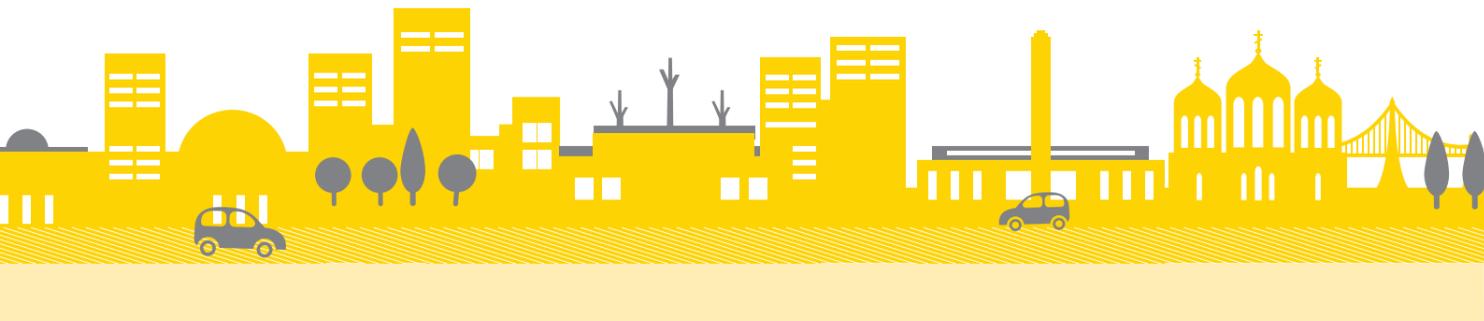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 세부사항

-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 개정
- 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편
- 3)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 적합여부 확인요청 의무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FAQ

창조적 문화활동의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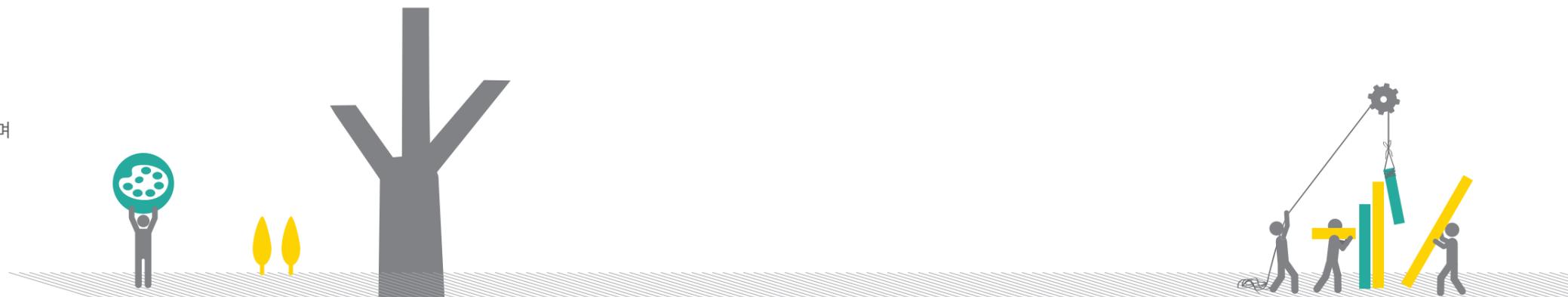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사의 길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

약 2년 간의 제도개선 심층연구,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개정안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편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의 전공학력을 인정해
예술 전문성 교과목 추가 이수 비용 부담 절감과 진입장벽을 완화하였으며
직무 차별성과 자격제도의 질적 수준,
취득희망자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의 3가지 핵심사항!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 개정
 - ▶ 원격대학 · 학점은행제 예술분야 학위취득자의 전공학력 인정(2016. 3. 1.부터)
 - ▶ 학교 · 사회 문화예술 참여경력에 따른 자격부여 유효기간 설정(2016. 3. 31.까지)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편
-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 적합여부 확인 요청 의무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시행시기

- 2015년 1월 부터 신 교육과정 운영 가능
 - 2016년 3월 1일부터 신 교육과정으로 자격취득 가능
 - 2021년 3월 31일까지 신, 구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격 취득 가능
- ※ 신, 구 교육과정 복합 이수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대체 교과목에 따라 이수 인정

개정 시행령(2016년 3월 1일) 시행 이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강 중인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신, 구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신,
구 교육과정을 복합 이수했을 경우에는 대체 교과목 표(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예정)를 참조하여 교육과정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http://acei.arte.or.kr>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 세부사항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 개정

원격대학 · 학점은행제 예술분야 학위취득자의 전공학력 인정 ('16.3.1.시행)

-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학력요건을 확대하여 개정 전에는 대학 · 전문대학 · 산업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등에서 예술 분야를 전공하여 졸업한 경우에만 전공학력 인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 · 사이버대)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학교 · 사회 문화예술 참여경력에 따른 자격부여 기한 설정 ('16.3.31.까지)

- 학교 ·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예술강사 경력자의 자격 부여에 대하여는 조항의 경과규정적 성격을 고려, 2016년 3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설정 하였습니다.



2급 문화예술교육사 학력 · 경력요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별표1])

신·구 대조표

현행

- 가. 「고등교육법」제29조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6호 · 제7호에 따른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 ·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
-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마.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개정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 ·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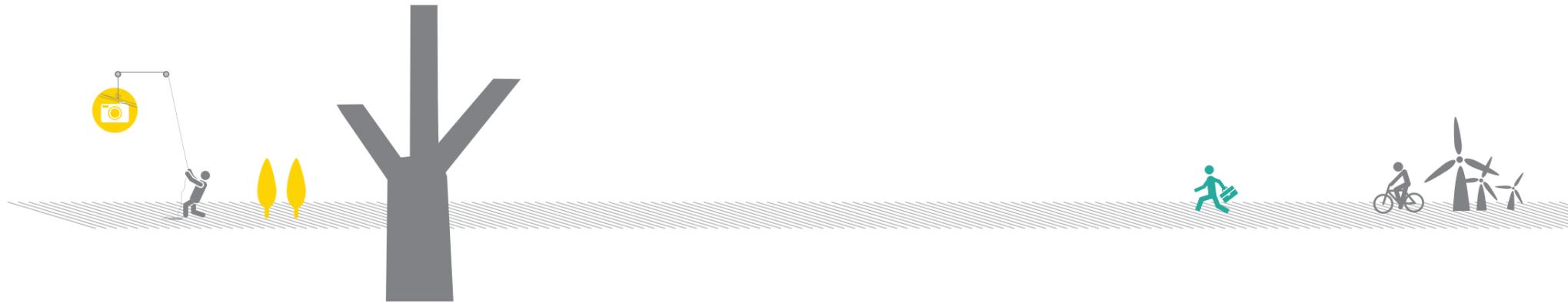
나. (현행과 같음)

다. 라. *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마. (현행과 같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문화예술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별표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등급별로 해당하는 학력·경력 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급 자격요건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요건
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교육과정 이수 * 5과목 (150시간)
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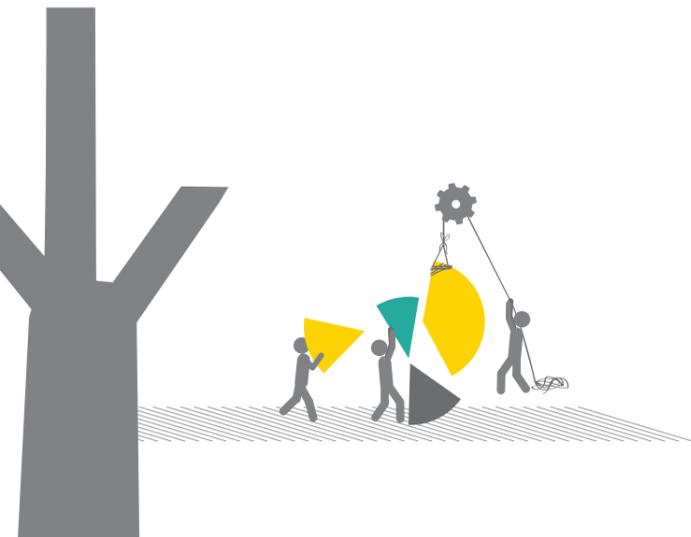
2 급 자격요건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요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예술 관련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 5과목 150시간 또는 10학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급 교육과정 이수 * 15과목 600시간 또는 40학점
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학교 예술강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연수과정 이수 * 140시간 이상 이수
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사회 예술강사)	
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이수

2016.3.31.까지
다, 라. 목으로
자격 취득 가능

※비고

-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
 - 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업무를 수행한 경력
- 문화예술교육사 2급 학력·경력 요건에 명시된 대학 등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과정 이수요건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학교, 사회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력자는 2016년 3월 31일까지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편('16.3.1.시행)

문화예술교육사의 질 높은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을 위해 1급 교육과정은 기획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과목으로 2급 교육과정은 현장의 이해와 문화예술교육 철학 및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개편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별표2])

1 급 교육과정

기존 7과목(180시간) → 5과목(150시간) 이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 중 교육과정 이수요건에 관한 1급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직무소양	1) 문화정책 사례연구	90시간 (3과목 이상)
	2) 예술경영(행정)	
	3) 문제해결기법	
	4) 문화예술교육 협력 및 파트너십	
	5) 한국의 문화와 미의식	
예술교육 전문성	1) 문화예술 교육과정 설계	90시간 (4과목 이상)
	2) 문화예술교육사례 워크숍	
	3) 예술치유	
	4) 통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 공동체기반의 문화예술교육	
	6)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90시간 (3과목)
	2)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3) 문화예술교육 관리 실무	
예술교육 전문성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I, II	60시간 (2과목)



2 급 교육과정

기존 19과목(48학점) → 15과목(40학점) 이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공자의 경우 9과목 → 5과목(10학점) 이수

2급 교육과정을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나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단, ① 번에 열거된 학교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의 경우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교수역량	1)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평가 (선택 2과목)	60시간 (4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 (선택 5과목)*	150시간 (10학점)
직무소양	1)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문화행사기획 (선택 1과목)	30시간 (2학점)
	2) 커뮤니케이션기법, 예술교육 상담 (선택 1과목)	30시간 (2학점)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 (10과목 이상)	450시간 (30학점)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 (2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 (3과목)* < 20페이지 참조 >	90시간 (6학점)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 (2학점)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 (10과목 이상)	450시간 (30학점)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

<p>국악</p> <p>국악 교육론, 국악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국악 교육프로그램 개발</p>	<p>음악</p> <p>음악 교육론, 음악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p>
<p>연극</p> <p>연극 교육론, 연극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연극 교육프로그램 개발</p>	<p>미술</p> <p>미술 교육론, 미술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미술 교육프로그램 개발</p>
<p>디자인</p> <p>디자인 교육론, 디자인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p>	<p>공예</p> <p>공예 교육론, 공예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공예 교육프로그램 개발</p>
<p>사진</p> <p>사진 교육론, 사진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사진 교육프로그램 개발</p>	<p>만화·애니메이션</p> <p>만화·애니메이션 교육론,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p>
<p>무용</p> <p>무용 교육론, 무용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무용 교육프로그램 개발</p>	<p>영화</p> <p>영화 교육론, 영화 교수학습방법(유아, 초등, 중등, 일반), 영화 교육프로그램 개발</p>

※ 비교 대학 등에서 여러 분야를 통합하여 개설·운영하는 교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 (예시: 미술·디자인 교육론).

3)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설 시, 교과목 적합여부 확인 요청 의무화('16.3.1.시행)

- 대학 등의 각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확인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이는 국가공인 자격제도의 질적 관리를 위한 장치로써, 교육기관이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신·구 대조표

현행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의2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별표 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교과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등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 제2호가목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FAQ

대학

질문1



대학 등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제3호 교육대학은 제외),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 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문화예술교육사 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심의신청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위탁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연 4회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질문2

법이 개정되면 지금까지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에 의해 인정받았던 교과목은 모두 소멸되나요?

답변

해당 자격 신청자가 구 교육과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2021년 3월 31일까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질문1

예술 전공자로 대학을 졸업했으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예술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에는 신·구 교육과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학위자는 제외, 신규 교육과정만 이수 가능) 2016년부터는 신 교육과정으로만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

질문2

2015년 현재,
예술대학에서
구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이
만약 대학의 교육과정이
신 교육과정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구 교육과정으로
이수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대학의 교육과정 변경으로 더 이상
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교과목 표를 참고하여
개정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미이수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이수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답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
본인의 전공이 문화예술교육사 10개 분야
(국악,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자격분야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070-7825-1460) 문의 후,
졸업한 학교 측에서 전공인정 신청을 하시면
심사 후, 해당 학과의 문화예술교육사 전공분야를 확정해 드립니다.

원격 대학 및 학점은행기관

질문1

원격대학 및 학점은행기관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을
언제부터 개설할 수 있나요? 

답변

2015년부터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나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확인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서면으로 심의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심의신청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위탁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연 4회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해드립니다.

원격 대학 졸업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질문1

원격대학 졸업자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는
언제부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까?



답변

2016년 3월 1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하며
교육과정은 법 시행(2014년 12월 23일)
이후부터 이수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교육과정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질문2

원격대학 및 학점은행제로
예술 관련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교육과정 적합여부 심사가
가능한지요?



답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자 및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도
교육과정 적합여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적합여부 신청은
출신학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개인적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기타

질문

법 개정 이후에는 학교·사회 예술강사 경력으로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나요?

답변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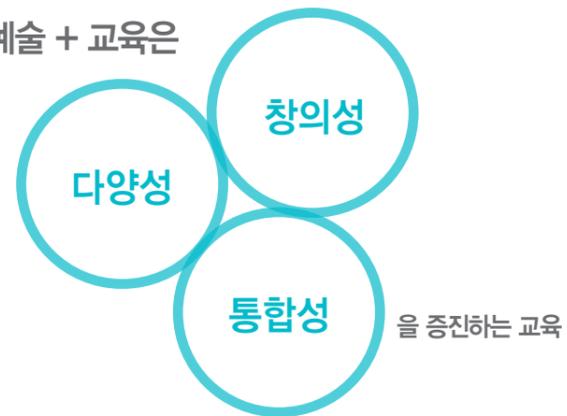
따라서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중
문화예술교육 경력 3년 이상,
교육진흥원 기본연수 140시간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2016년 3월 31일 이 전까지 반드시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자격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의 실현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은
향유자의 입장에서
예술을 위한 교육보다는
예술을 통한 새로운 교육을 지향합니다.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즐거움과 감동을
싹 틔우고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 + 교육은



3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의 실현

문화예술교육사 전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현황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경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현황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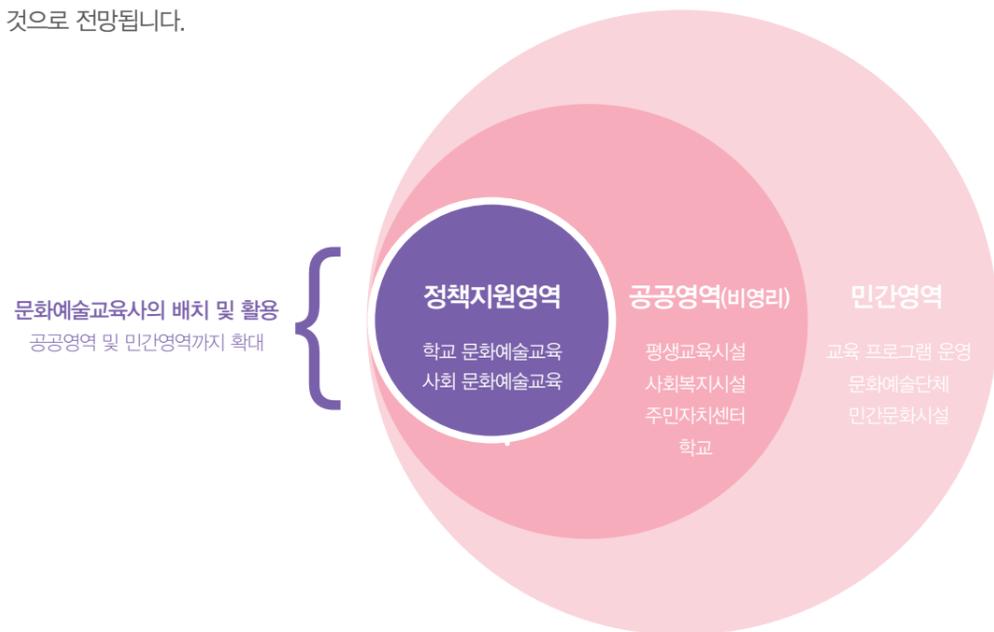


01

문화예술교육사 전망

학교, 문화기반시설에서 다양한 민간단체로 활동영역 확대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과 같은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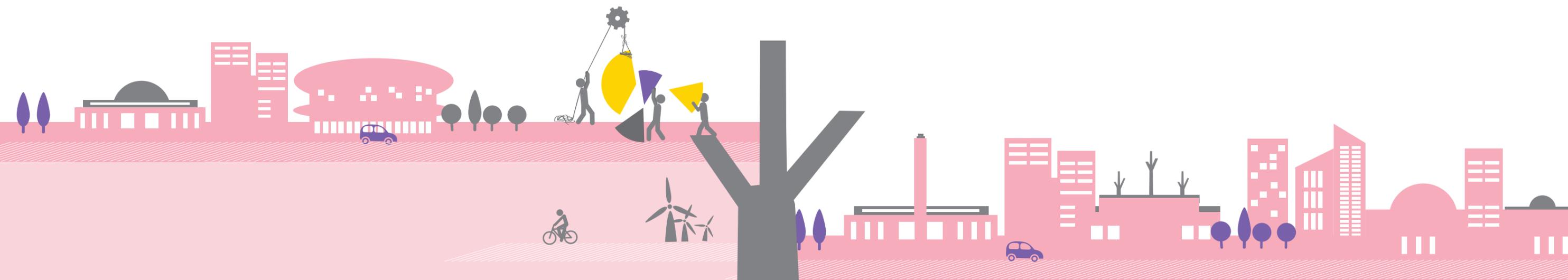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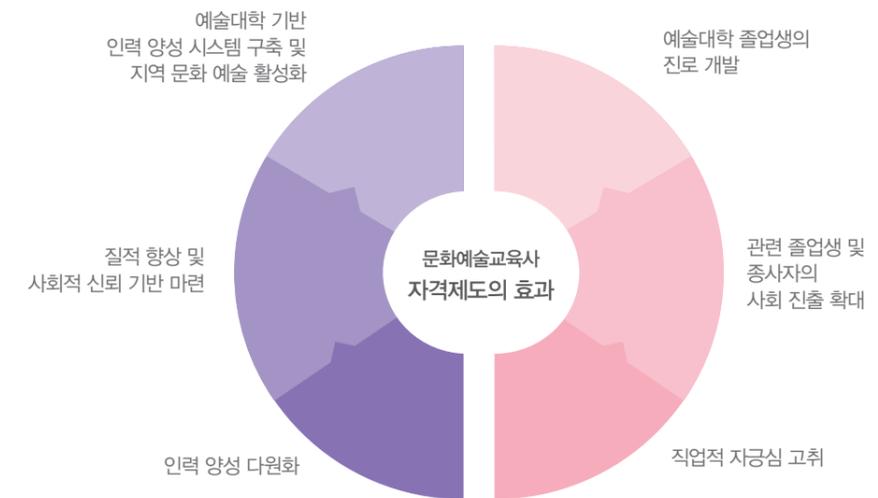


관련 법령(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 20조)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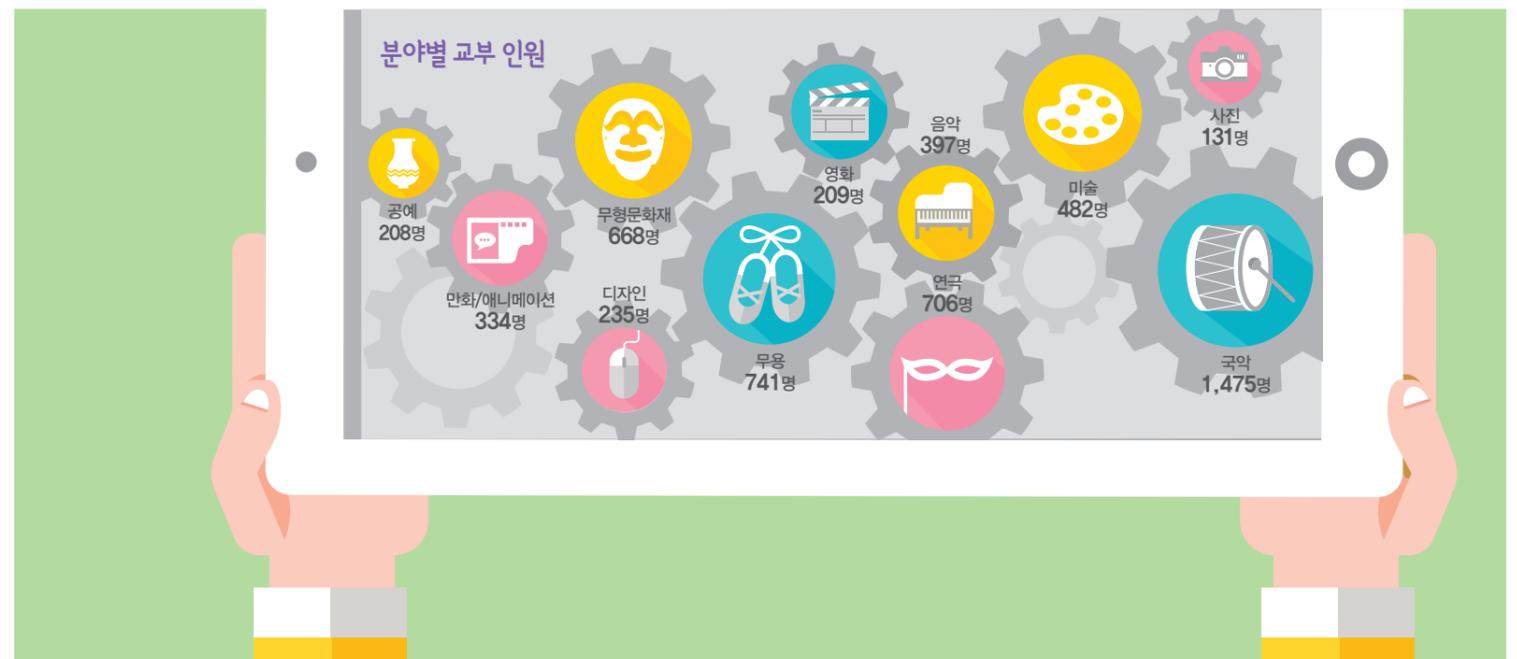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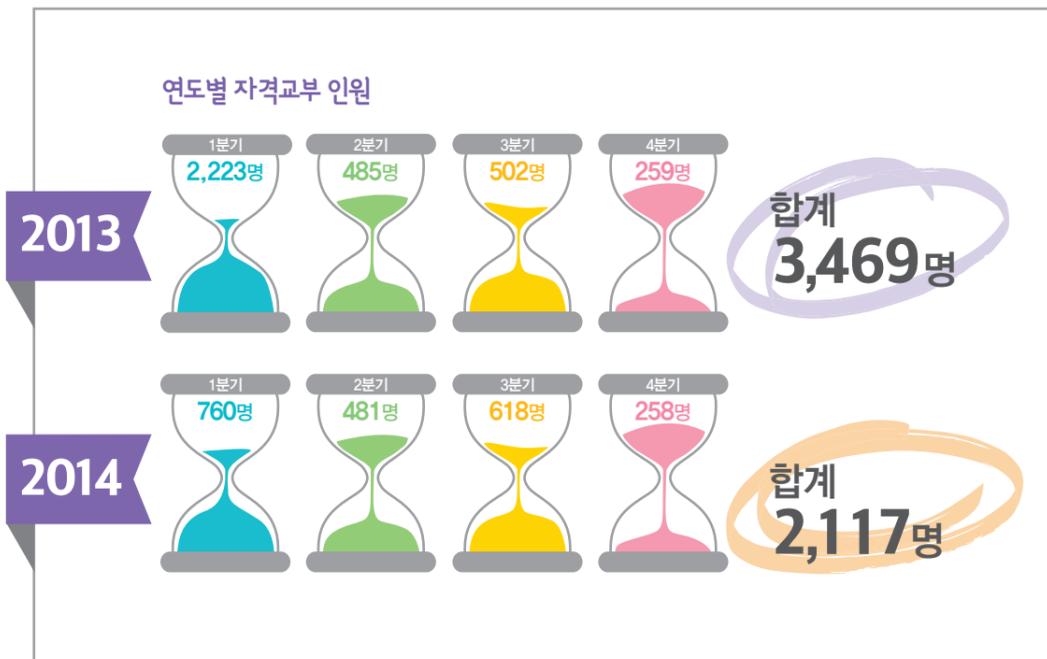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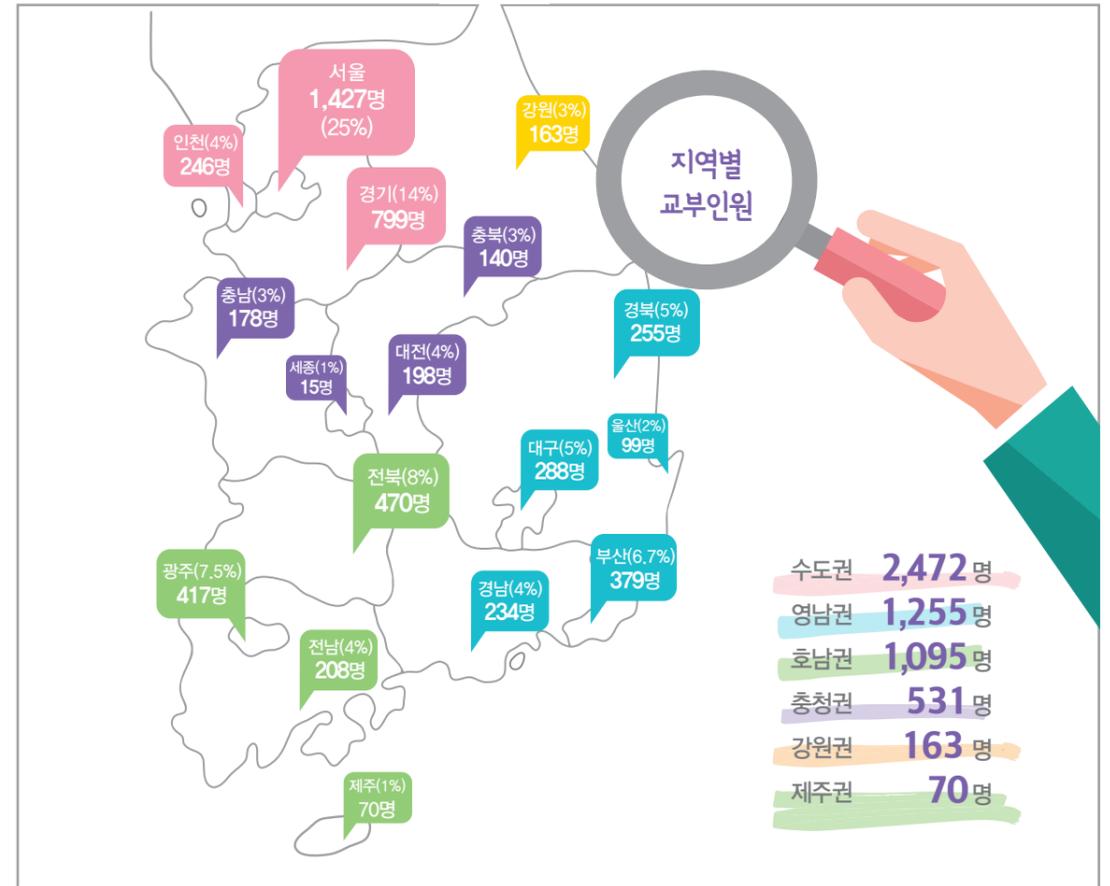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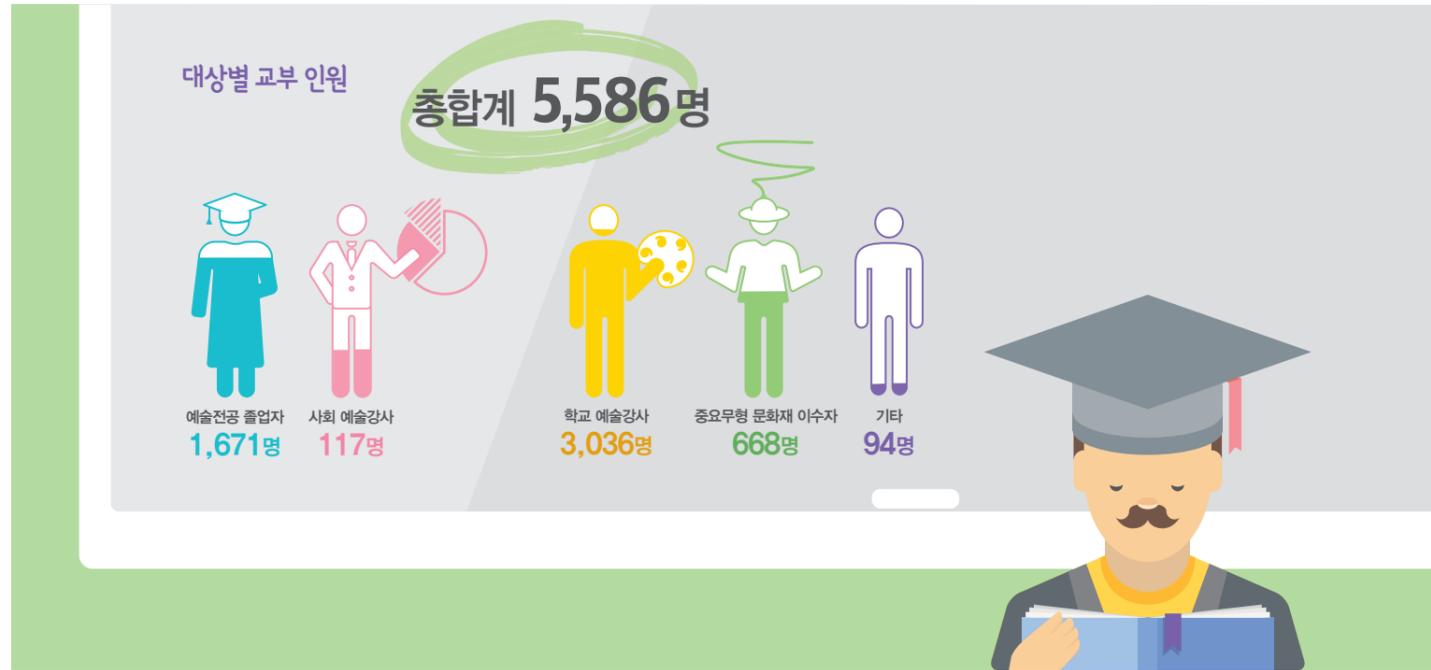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 위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함
관련 세부사항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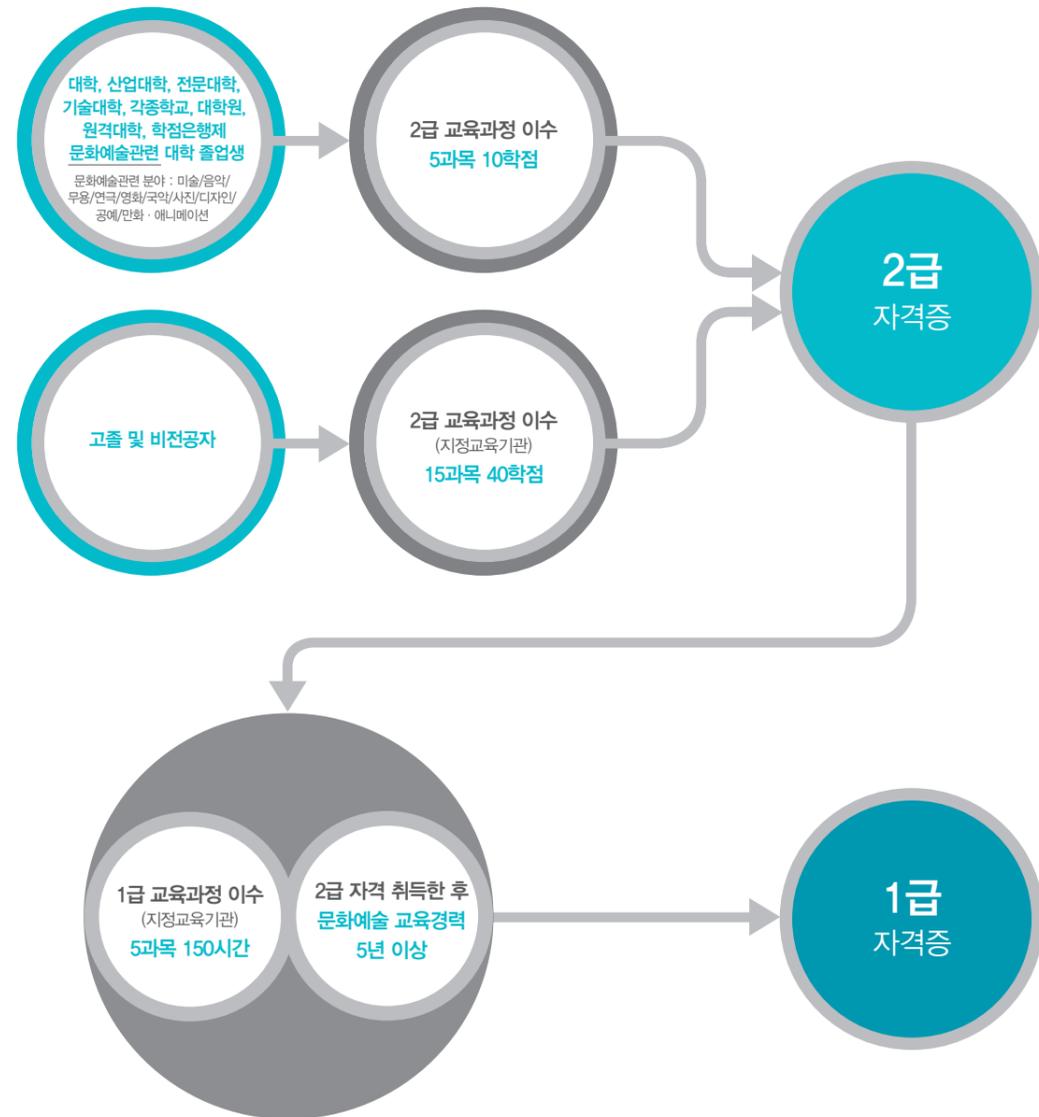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현황

2014. 12. 1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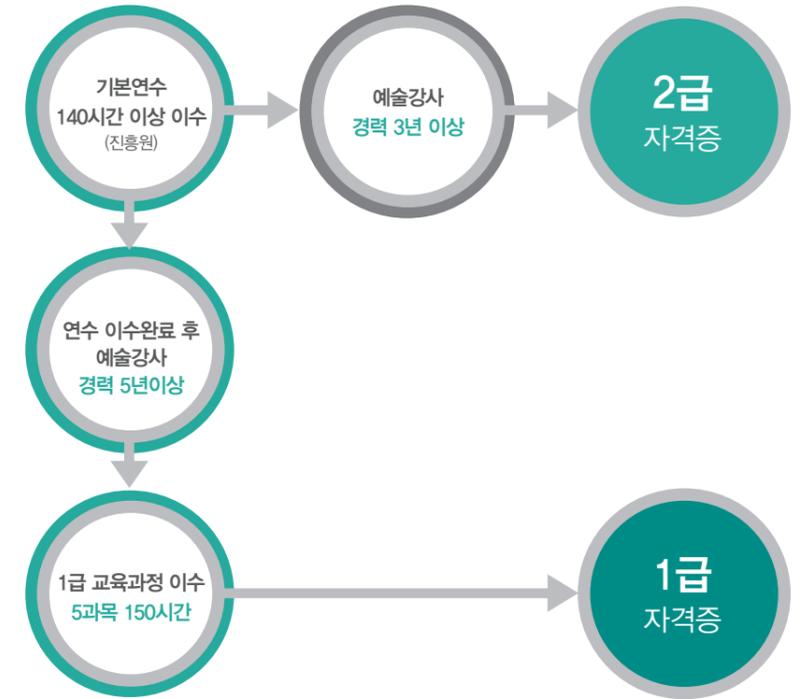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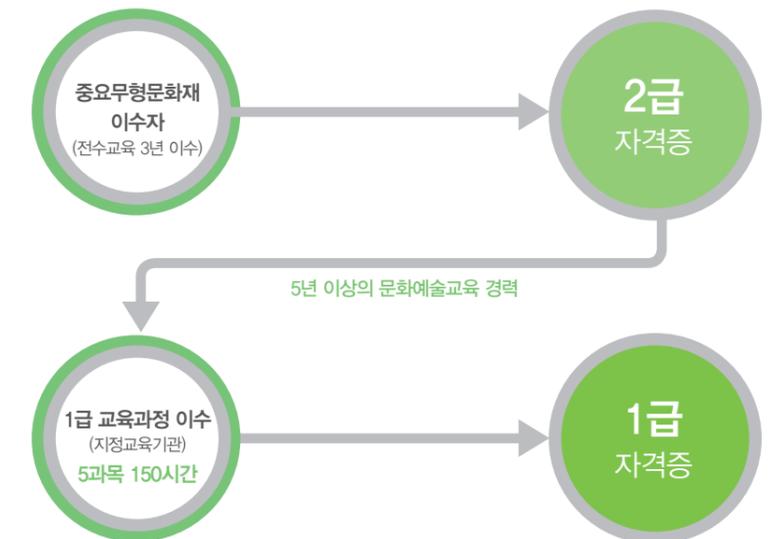
일반인



학교/사회 예술강사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현황

1 급 교육과정 교육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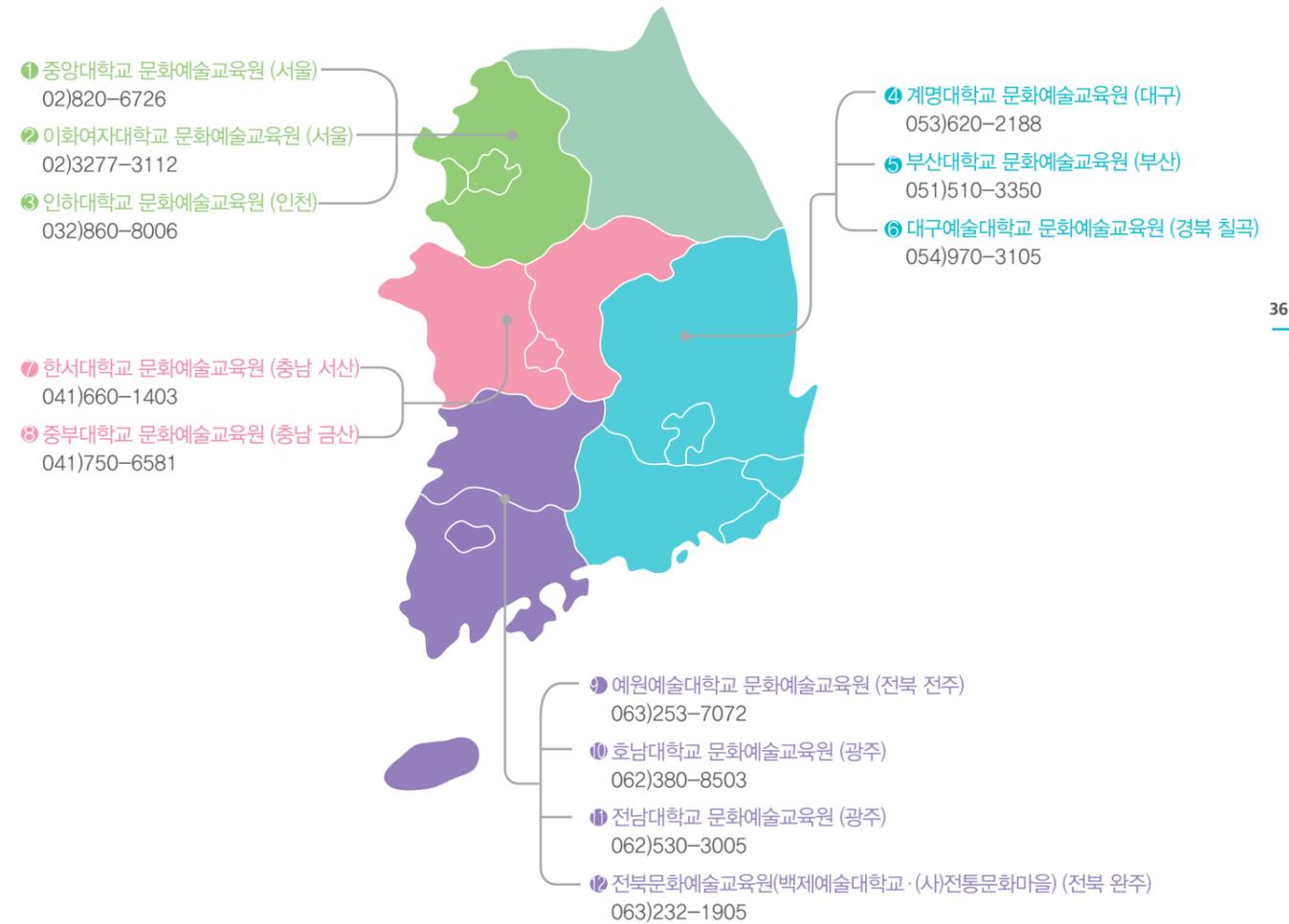
대상 :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기관 : 2016년 과정운영 (예정)

2 급 교육과정 교육기관

대상 : 문화예술 관련 졸업자, 고졸자 및 비전공자

연번	기관명	교육과정 이수 가능 분야
1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2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디자인, 무용, 음악, 미술, 공예
3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무용, 미술,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4	계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5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디자인,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6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무용, 음악, 미술, 만화·애니메이션
7	한서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디자인,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8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9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무용,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10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디자인,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11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국악, 디자인, 음악, 미술, 공예
12	전북문화예술교육원 (백제예술대학교·(사)전통문화마을)	국악, 사진, 음악, 영화

지역별 지정교육기관



※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은 지정 기간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등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온라인 신청

- 자격요건 선택
- 신청서 작성
- 교육과정 이수내용 입력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http://acei.arte.or.kr>

〈 온라인 첨부 서류 〉

가 예술 관련 분야 전공자
증명사진/학력증명서/성적증명서/수료증(해당자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비전공자)
증명사진/학력증명서/성적증명서(해당자만)/수료증

다/라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교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교/사회 예술강사)
증명사진/학력증명서/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해당자만)/
연수이수증(해당자만)

마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자
증명사진/학력증명서/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

우편 제출

우편 제출 서류를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앞으로 송부

〈 우편 제출 서류 〉

가 예술 관련 분야 전공자
교부신청서/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학력증명서(원본)/성적증명서(원본)/범죄경력조회동의서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비전공자)
교부신청서/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학력증명서(원본)/범죄경력조회동의서

다/라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교수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교/사회 예술강사)
교부신청서/경력증명서(원본, 해당자만)/범죄경력조회동의서

마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자
교부신청서/범죄경력조회동의서

수수료 안내 수수료 : 1만원 (자격접수 완료 이후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2015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 연간 일정 (연4회)

분기	접수기간	검토·심사	교부
1	2.23 ~ 3.6	3.9 ~ 3.27	3.30
2	5.18 ~ 5.29	6.1 ~ 6.22	6.23
3	8.24 ~ 9.11	9.14 ~ 10.5	10.6
4	11.16 ~ 12.4	12.7 ~ 12.24	12.28

* 접수기간 및 교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상담

1. 전화상담
 - 대표번호 : (국번없이) 070-7825-1460
 - 상담시간 : 평일 월~금 /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홈페이지 상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http://acei.arte.or.kr>)

국가공인 자격
**문화
예술
교육사**

문화예술교육의
더 큰 성장과
내일을 위해
튼튼한 징검다리가
놓입니다

발행일 2014. 12.
 발행인 주성혜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 소 (우 121-84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128
 문 의 02-6209-5900
 홈페이지 www.arte.or.kr / acei.arte.or.kr
 기 획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FTF
 디자인 디자인시티



본 자료집은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